김해 원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 내용)

2015. 08

㈜경성에스테크 외 4개사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변 개별입지공장, 덕암일반산업단지, 덕암2일반산업단지 및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등과의 산업기능 집적화로 연관사업 발전유도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개별입지 확산 방지를 통한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시행령 [별표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는 다음과 같다.

◦ 또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부지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표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법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전
본 사업	◦ 산업단지 종류 : 일반산업단지 ◦ 개발면적 :210,780㎡	산업단지계획 승인전

1.3 사업개요

◦ 사업명 : 김해 원지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 사업의 종류(규모) : 일반산업단지

◦ 사업면적 : 210,780㎡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167-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주)경성에스테크 외 4개사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사업비 : 28,274백만원

◦ 입주업종

구　분	주 요 업 종
C25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그림 1.3-1> 사업지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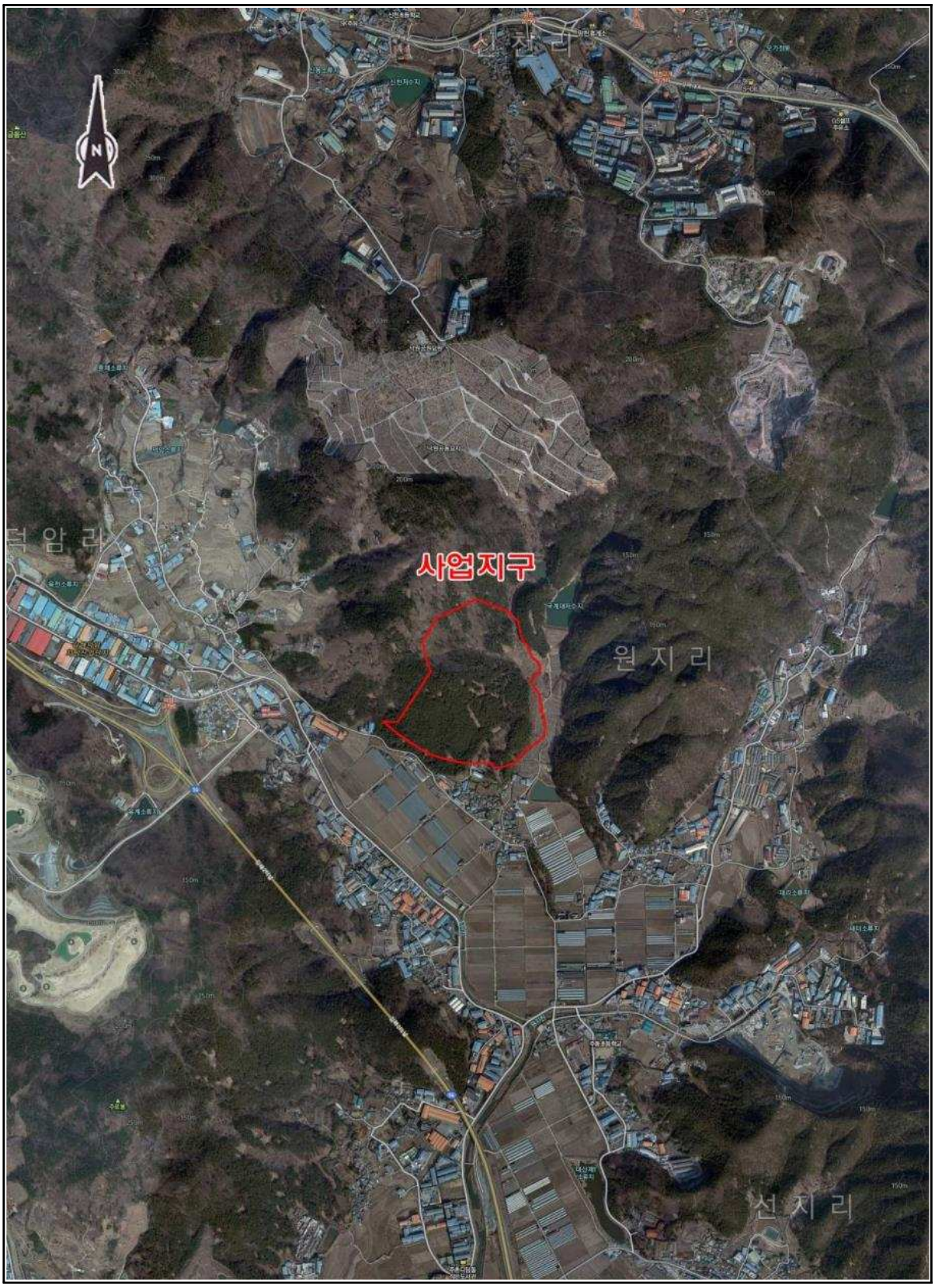

<그림 1.3-2> 위성사진

1.4 사업의 주요내용

가. 지목별 현황

◦ 사업지구의 전체 사업부지 면적 210,780㎡ 중 임야가 193,412㎡(91.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답 15,389㎡(7.4%), 구거 1,254㎡(0.6%), 전, 목장용지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4-1> 지목별현황표

구 분	면적(㎡)	필지수	구성비(%)	비 고
합계	210,780	61	100.0	
임야	193,412	32	91.6	
전	658	3	0.3	
답	15,389	24	7.4	
구거	1,254	1	0.6	
목장용지	67	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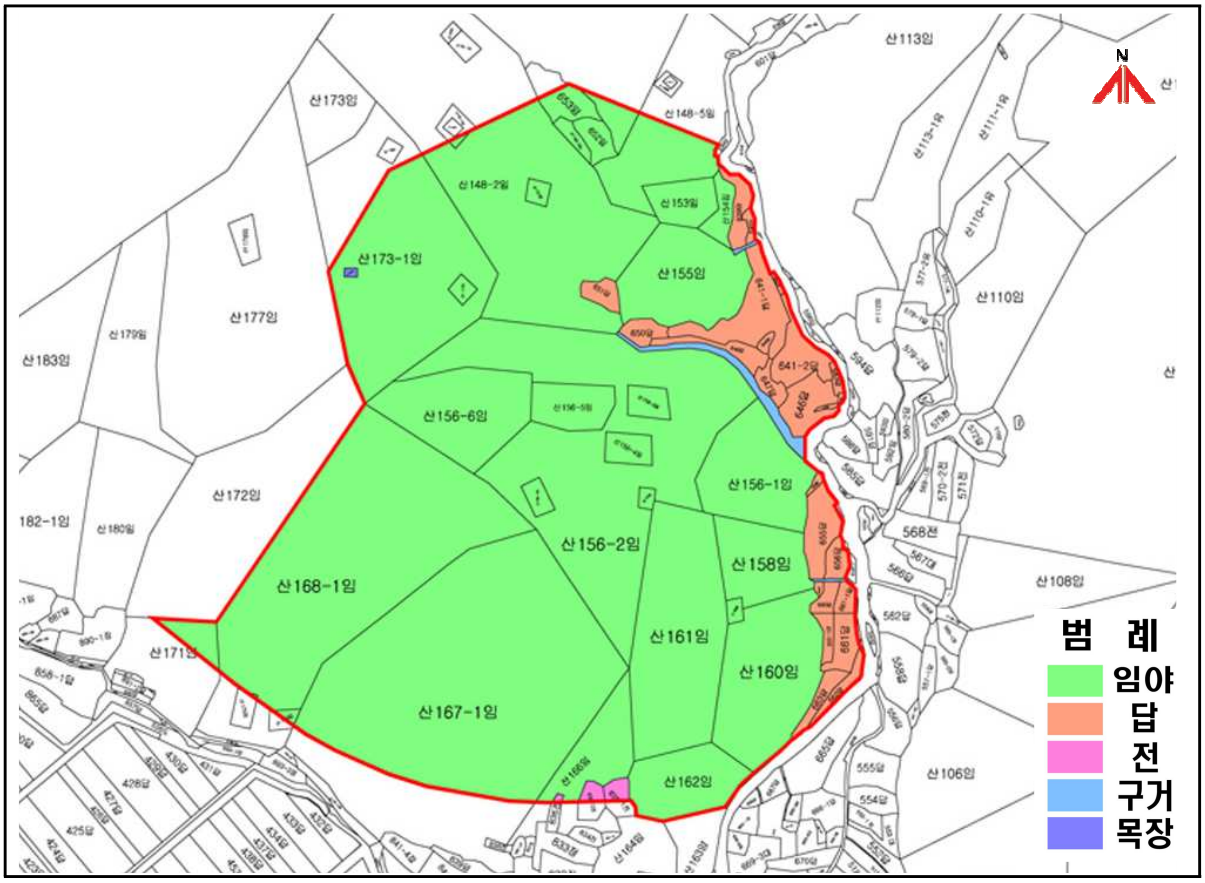

<그림 1.4-1> 지목별현황도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지구의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사유지가 179,377㎡(85.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공유지(김해시)가 30,149㎡(14.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가 1,254㎡(0.6%)로 구성되어 있음.

<표 1.4-2> 소유자별 현황표

구 분		면적(㎡)	필지수	구성비(%)	비 고
계		210,780	61	100.0	
사유지		179,377	56	85.1	
국·공유지	김해시	30,149	4	14.3	
	농림축산식품부	1,254	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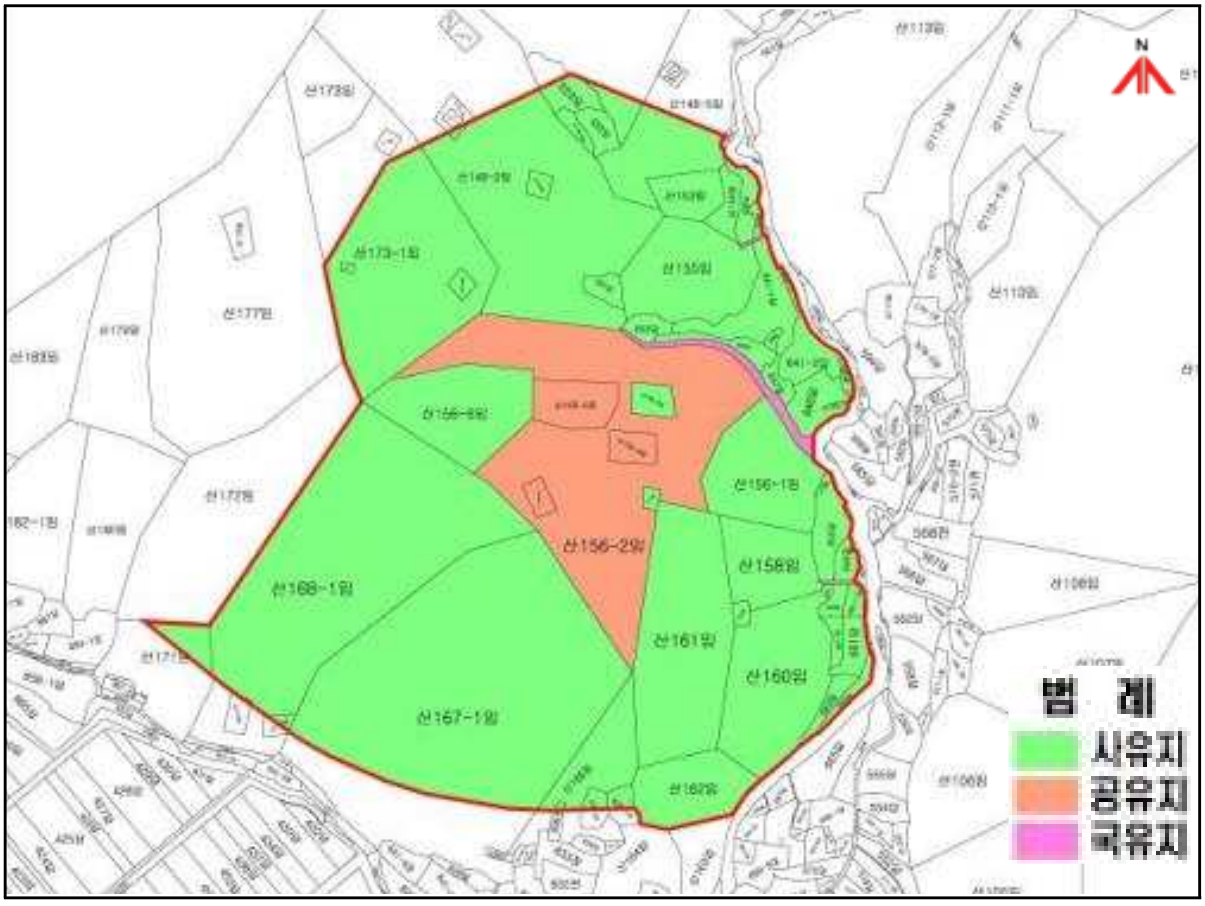

<그림 1.4-2> 소유자별현황도

다. 용도지역 현황

◦ 사업지구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100%(210,780㎡)로 구성되어 있음.

<표 1.4-3> 용도지역 현황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자연녹지지역	210,780	100.0	

<그림 1.4-3> 용도지역현황도

라. 토지이용계획

<표 1.4-4>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10,780	100.0	
산업시설용지		142,550	67.6	
	BL1	8,873	4.2	
	BL2	8,159	3.9	
	BL3	28,554	13.5	
	BL4	62,122	29.5	
	BL5	34,842	16.5	
지원시설용지		886	0.4	
공공시설용지		68,230	32.4	
	도로	27,534	13.1	
	주차장	4,848	2.3	
	유수지	4,216	2.0	
	배수지	782	0.4	
	수질오염방지시설	1,467	0.7	
	공원	6,189	2.9	
	녹지	22,308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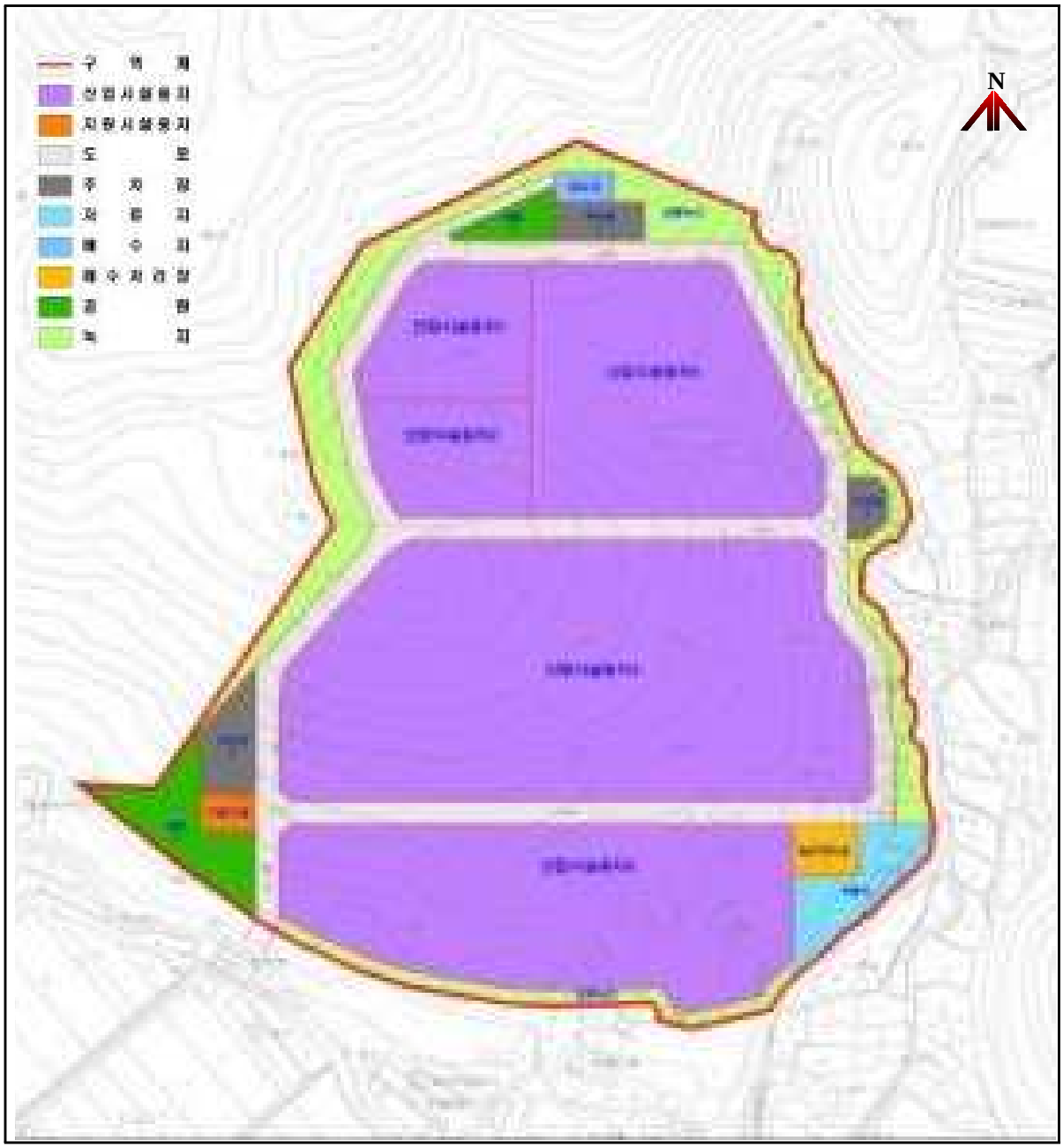

<그림 1.4-4> 토지이용계획도

마. 배치계획

-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의 100%(142,550㎡)를 입주기업체들이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는 계획임.
- 사업대상지내 업종구분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에 따라 분류.
- 산업시설용지 총면적 142,550㎡ 중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은 63.6%인 90,676㎡,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은 6.0%인 8,87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은 5.8%인 8,15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은 24.6%인 34,842㎡로 계획함.

<표 1.4-5> 업종배치계획표

업 종	업체명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42,550	100.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동아볼트㈜	62,122	44.0	
	씨에스메탈	28,554	19.6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티엔에스산업	8,873	6.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경성에스테크	8,159	5.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하나정공	34,842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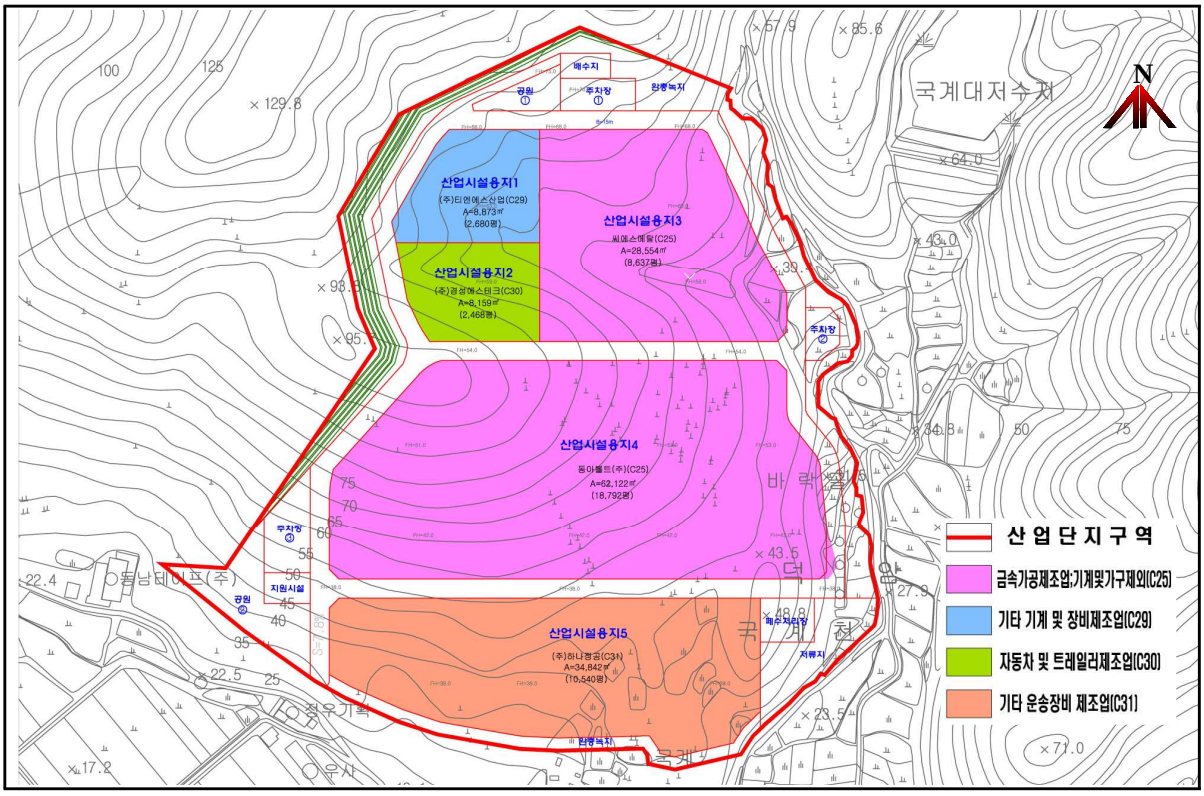

<그림 1.4-5> 업종배치계획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 계획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평가대상지역)을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표 2.1-1>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내용	평가대상지역	비 고
대기환경	기 상	◦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 기 질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예측	사업지구 경계 1.0km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악 취	◦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량 예측	사업지구 경계 1.0km이내 지역	운영시
	온 실 가 스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에너지 이용시설 및 교통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수환경	수 질 (수리·수문)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및 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사업지구 경계 1.0km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토지환경	토 지 이 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요소 변화예측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토 양	◦ 산업단지 주변 유류유출에 따른 토양오염 및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지 형 · 지 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변화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구	공사시
자연생태환경	동 · 식 물 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등의 변화 예상지역	사업지구 경계 1.0km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자 연 환 경 자 산	◦ 사업시행에 따라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생활환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대책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소 음 · 진 동	◦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및 평가	사업지구 경계 1.0km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경 관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위 생 · 공 중 보 건	◦ 운영시 산업단지입지로 인한 건강결정요인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회경제환경	인 구 · 주 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산 업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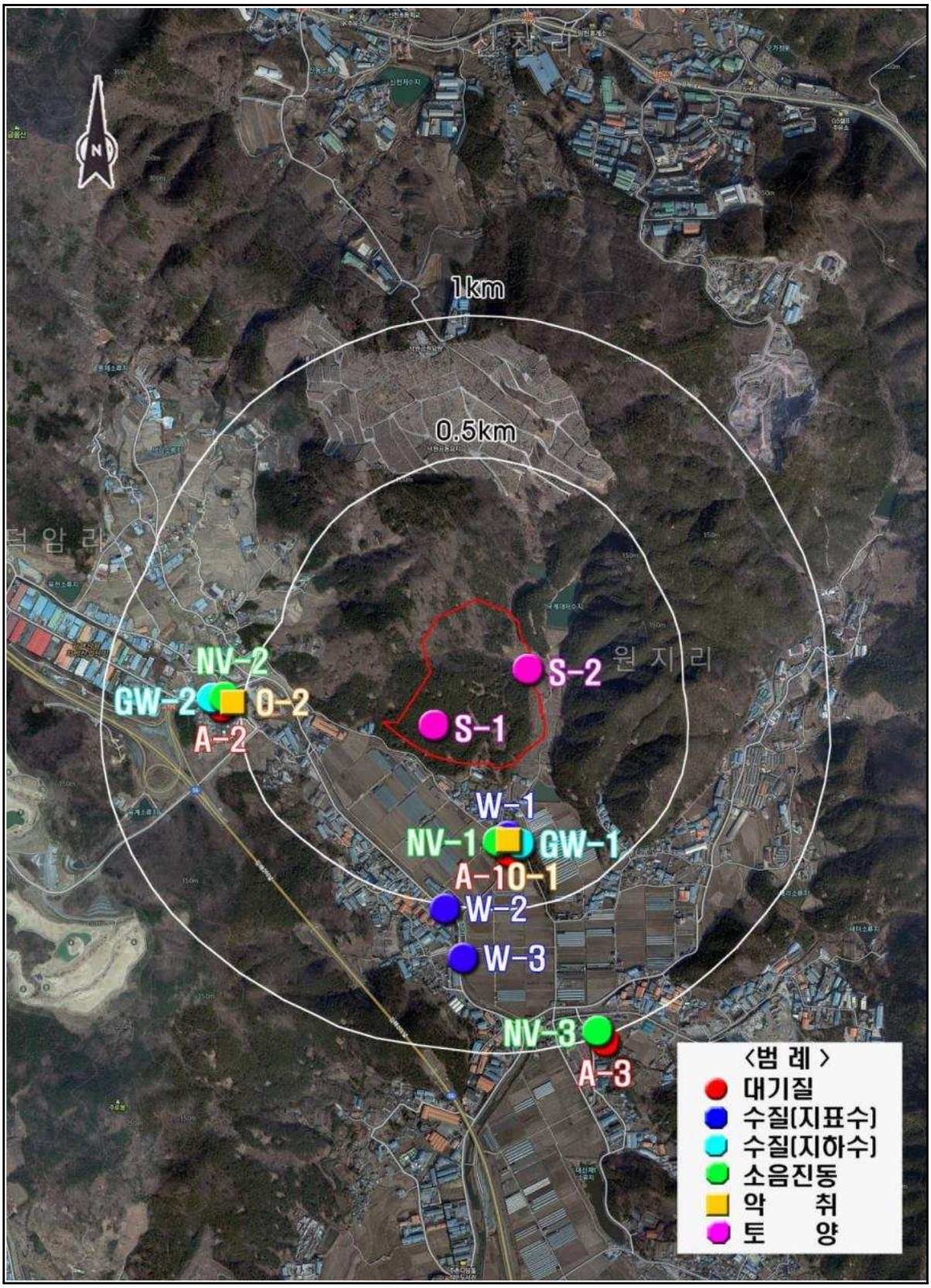

<그림 2.1-1> 대상지역 설정도

2.2 환경영향평가항목의 선정

가.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6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3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는 <표 2.2-1>과 같음

<표 2.2-1> 평가항목 선정(제외)사유

구 분		항목	선정사유
평가항목	대기환경	기 상	- 대기질 및 악취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 차량통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악 취	- 운영시 발생하는 악취물질로 인한 영향
		온 실 가 스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
	수환경	수 질 (수리·수문)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 부지조성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파악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수질에 미칠 영향 - 운영시 공장가동에 따른 오수 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토지환경	토 지 이 용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토 양	- 사업지구의 토양오염 현황파악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검토
		지 형 · 지 질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및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등
	자연생태환경	동 · 식 물 상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자연환경자산	- 통계자료를 통한 사업지구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파악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소 음 · 진 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상 - 운영시 공장가동 및 교통소음 발생으로 인한 영향
		경 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
		위생·공중보건	- 통계자료를 통한 사업지구의 위생·공중보건 현황 파악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산업	- 통계자료를 통한 사업지구의 인구, 주거, 산업현황 파악
		전 파 장 해	- 사업시행시 전파장애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제외항목	수환경	해 양 환 경	- 사업시행과 관련 없음
	사회경제환경	위 락	- 본 사업특성상 위락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 됨
		일 조 장 해	- 사업시행시 일조장애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2.3 조사·예측·평가 방법

가. 조사, 예측의 방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2.3-1>와 같음

- 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로 함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지구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함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2.3-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1/2)

구분	항목	예측평가방법	관련자료
대기 환경분야	기 상	◦부산기상청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를 이용·분석	◦기상연보 (부산기상청, 2004~2013)
	대 기 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조사결과와 사업시행시 오염원별 발생량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AERMOD모델을 이용한 예측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건설공사표준품셈 ◦EPA자료 ◦AIRMOD모델을 이용한 예측
	악 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악취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악취영향 예측 ◦AIRMOD모델을 이용한 예측	◦기존문헌 및 조사자료 ◦악취공정시험방법
	온 실 가 스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온실가스량 산정 ◦운영시 에너지 이용시설 및 교통량에 의한 온실가스량 산정	◦온실가스 항목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수환경 분야	수 질 (수리·수문)	◦공사중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및 운영시 홍수량 변화 예측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현황 측정, 분석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점·비점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기존문헌 및 조사자료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수계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표 2.3-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2/2)

구분	항목	예측평가방법	관련자료
토지 환경분야	토지이용	◦사업계획내용을 참고하여 토지이용변화 예측·분석	◦통계연보 및 사업관련 설계도서
	토 양	◦현장조사자료 및 사례조사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원의 영향 예측·분석	◦현장측정자료 등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지형·지질	◦사업지구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 및 설계자료를 통한 지형·지질변화 예측	◦지형도 및 지질도 ◦지반조사보고서 ◦연약지반조사보고서
자연·생태 환경분야	동·식물상	◦현지조사 및 기존자료를 조사·분석하여 현존식생 및 녹지자연도를 작성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변화 예측	◦기존문헌 및 조사자료 ◦현지조사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기존문헌 및 조사자료
생활 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원단위와 유사사례를 이용한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예측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하수도통계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소음·진동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측정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의 영향 예측·분석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점음원 거리감쇠공식 ◦건설기계류의 소음·진동 특성
	경 관	◦조망점별 경관특성(요소)조사 및 가시권분석 ◦사업관련 설계도서를 통한 경관변화예측	◦현지조사 및 가시권분석 ◦사업관련 설계도서
	위생·공중보건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측	◦운영시 대기질 비발암성 물질 및 발암성 물질의 위해성 평가 ◦운영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위해성 평가
사회·경제 환경분야	인구·주거 산 업	◦산업단지 계획인구 산정 ◦업체 입주에 의한 산업구조변화	◦기존문헌 ◦산업단지 개발계획

나. 평가방법

◦ 평가항목마다 본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리하고, 환경영향을 회피 또는 저감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도출함

2.4 환경질 조사계획

◦ 계획대상지 주변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음·진동 3개지점, 대기질(악취) 3개지점, 토양 2개지점, 지표수질 3개지점, 지하수질 2개지점을 현황측정지점으로 선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2.4-1> 환경질 현황측정지점

구 분		위 치
대기질	A-1	국계마을회관(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693번지)
	A-2	옥천마을회관(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898번지)
	A-3	주동초등학교(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48-1번지)
수질(지표수)	W-1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807번지 앞 소하천
	W-2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768번지 조만강(소하천 합류전)
	W-3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722번지 조만강(소하천 합류후)
수질(지하수)	GW-1	국계마을회관(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693번지)
	GW-2	옥천마을회관(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898번지)
소음진동	NV-1	국계마을회관(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693번지)
	NV-2	옥천마을회관(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898번지)
	NV-3	주동초등학교(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48-1번지)
악취	O-1	국계마을회관(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693번지)
	O-2	옥천마을회관(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898번지)
토양	S-1	사업지구 내
	S-2	사업지구 내

<표 2.4-2> 환경질 현황측정항목

구 분	위 치
대기질	PM-10, PM-2.5, SO_2, NO_2, O_3, CO, Pb, 벤젠 -8개항목 3일연속
수질(지표수)	수온, pH, DO, COD, TOC, BOD, SS, T-N, T-P, CN, Cr^{6+}, Cd, Cu, Pb, As, Hg, ABS, 총대장균군수 - 18개항목
수질(지하수)	pH, Cd, As, CN, Hg, 페놀, Pb, Cr^{6+}, $KMnO_4$, NH_3-N, NO_2-N, Cl^-,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수, Cu, Fe, F, Zn, 경도, 색도, 탁도, 수위 - 22개항목
소음진동	소음 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 주간 2회 야간 1회
악취	지정악취(22개항목), 복합악취
토양	Cd, Cu, Pb, As, Hg,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 BTEX(4개), TPH, TCE, PCE, 벤조(a)피렌 - 토양오염 우려기준 21개항목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검토

◦ 기타 해당 계호기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현황 및 의견

심의위원	협의의견	
김해시 도시개발과장 이명우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성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 의견없음
		3.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공사 중 민원 발생이 많은 부분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 및 소음진동 방지대책(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저소음기계 사용 방안 검토).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 등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 ◦ 공람기간 선정 시 공휴일은 제외하고,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충분히 홍보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5. 간의평가 대상 여부 ◦ 의견없음
		6. 기타 ◦ 의견없음

김해시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	총괄의견	◦ 심의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적정한 대안 및 저감방안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성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산업단지 경계부분은 전체 완충녹지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지점 선정시 인근 정온시설 분포현황 및 토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최대한 선정하고 사업시행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하여야 함 ◦ 평가항목 중 대기질 및 악취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대상지 2㎞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없음
		6. 기타 ◦ 수질오염총량 관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별도 협의하여야 함.

심의위원	협의의견	
김해시 환경관리과장 조준현	총괄의견	◦ 일반산업단지 경계부분 전체 완충녹지로 계획하고, 남측 주거지역 인접경계부분은 완충녹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성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인근 주거지역 등 정온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충분한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하여 저감방안 마련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없음.
		6. 기타 ◦ 투자의향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노기현	총괄의견	◦ 의견없음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성지역의 설정 ◦ 사업지구 인근에 덕암일반산업단지(운영중), 이노비즈일반산업단지(공사중)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기질·악취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지구 경계 2.0km 이내로 확대하여야 함. ◦ 소음·진동은 사업부지 인근 주거지역, 교육시설 및 토사운반로, 공사차량 진·출입로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에 운영중 또는 공사중이거나 운영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시 설정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를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기상, 수질, 동·식물상 - 3개월 이상의 부지기상 측정자료 또는 사업지역 주변 기상청 AWS 자료, 인근 산업단지 기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관성 분석 후 대기질 모델링에 사용하여야 함. - 기상, 수질, 동·식물상은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시 문헌(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에 의해 사업지역 및 인접지역에 서식이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실시

심의위원	협의의견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노기현	심의의견	◦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지역내 정온시설 분포현황(주거 밀집지역 등) 및 기존 평가토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평가하여야 함 - 대기질 현황조사는 2계절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역에서 발생가능한 악취물질을 선정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이므로, 현재 가동중인 업체의 배출시설 설치현황 등을 검토하여 대기(악취 포함)오염물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최적의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업단지 조성시 사업지역에 인접한 국계마을, 축사에 미치는 영향일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종배치계획 및 완충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 질 - 공사시 및 운영시 폐수,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하류수계(저수지 포함)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내 수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평가하여야 함 - 사업지구 동측의 국계대저수지, 남동측 국계저수지에 대한 집수구역, 수계현황 등을 제시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입지제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하는 폐수를 인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위생·공중보건(건강영향) - 운영시 발생 가능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확인하고 계절별 특성이 반영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누적평가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토 양 -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하여야 함 ◦ 지형·지질 - 표고차 약 83m 임야를 단차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지형훼손과 사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면 및 사토 최소화 방안, 지형변화지수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함 - 대량의 사토가 발생할 경우 사토처리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토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녹지자연도 7등급 및 경사도 20도 이상인 북동측 부지 일부를 사업지구에서 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경 관 - 사업지구 남측 주거지역에서의 조망이 용이하여 경관상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심의위원	협의의견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노기현	심의의견	3.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 여부 ◦ 주변지역에 주거지 및 개별공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본 사업 시행으로 대기질, 동·식물상, 지형·지질, 경관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없음
		6. 기타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71호, 2013.12.27.)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동완교수	총괄의견	◦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완충녹지를 확보하고, 공사로 인한 먼지 및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토사유출, 농경지 침수 등의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성지역의 설정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총괄의견 참조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은 적절하게 선정되었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사업추진시 주민의견을 적극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사업계획인 산업단지임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6. 기타 ◦ 없음

심의위원	협의의견	
인제대학교 환경공학부 박흥재교수	총괄의견	◦ 완충녹지를 마운딩을 통해 주변지역과 격리하고, 마운딩 상부의 조경으로 대기오염물질 확산방지 및 공원화를 통한 휴식 및 산책공간 조성요함. 발생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 방안제시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성지역의 설정 ◦ 정온시설 및 주위 저수지를 포함한 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총괄의견에 제시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본 환경영향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은 적절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의견수렴시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무관함
		6. 기타 ◦ 없음
김해YWCA 정재연회장	총괄의견	◦ 주변산업단지(덕암일반산업단지1,2. 이노비즈벨리일반산업단지 농소일반산업단지)등 과의 산업기능 집적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 과연 수요공급 측면에서 더 이상의 산업용지 공급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입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불가피 하다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로 본 시설 입지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임.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성지역의 설정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최소1km이내지역은 물론 주변지역 산업단지, 주거단지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확대하여 보다 더 확대 설정함이 타당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지구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지역으로 자연생태계의 단절을 최소화 하기위한 완충녹지의확충, 동식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 필요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대기,수질,자연생태환경도 중요하지만 주거생활환경분야에 대한 영향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연접한 자연부락 취락지역은 물론 현재 조성중에 있는 선천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주거단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있어야 할것임.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제시된 의견수렴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설명회 및 공청회의 경우 주민이 원할 경우 2~3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법에 의한 약식절차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기존의 인근지역 대규모 산업단지(농소일반산업단지,덕암일반산업단지) 및 주거단지(선천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자연취락지역)가 혼재해 있는 지역으로써 반드시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하겠음.
		6. 기타 ◦ 없음

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심의(서면) 요청공문 및 심의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심의(서면) 개최 공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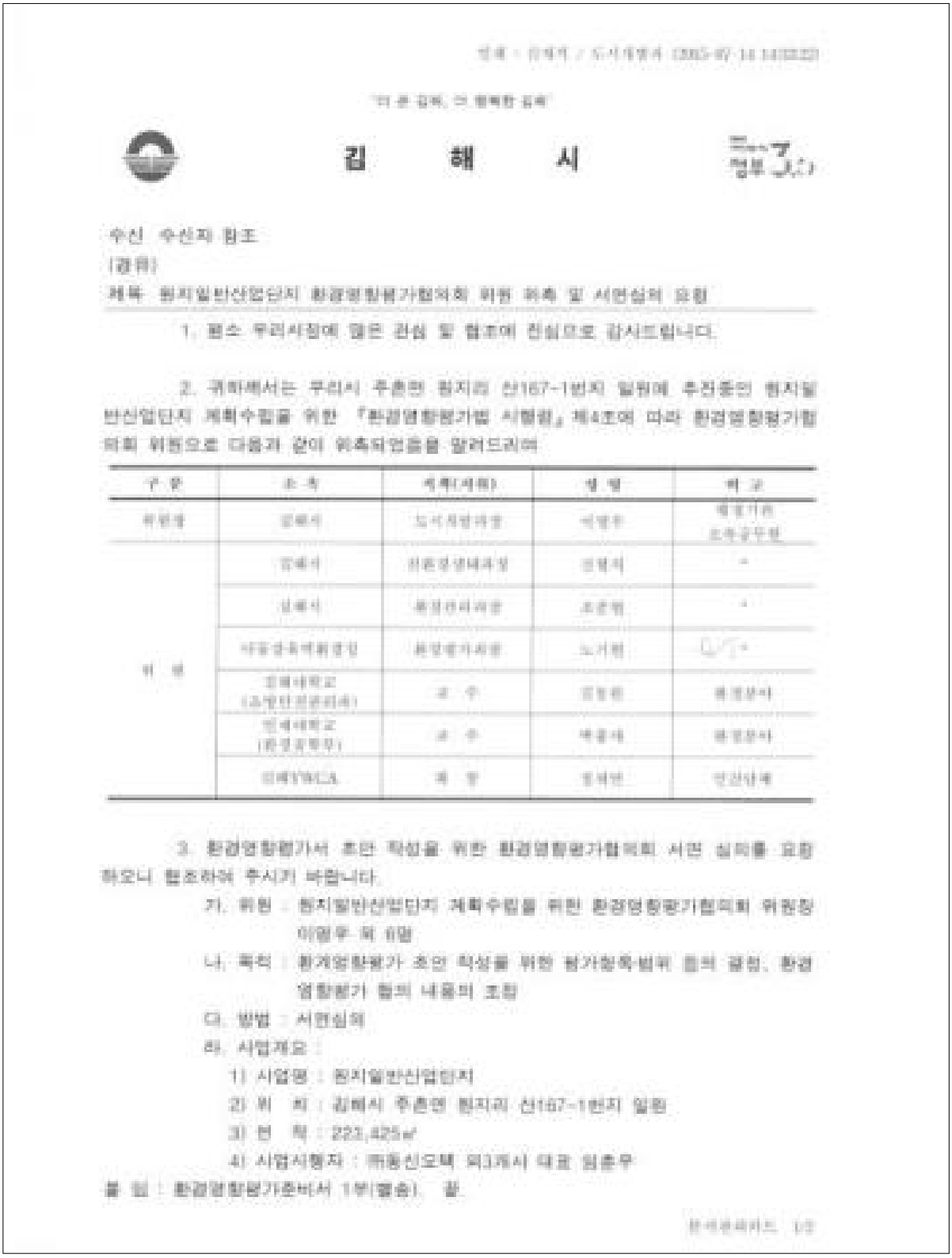

김 해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원지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요청

1. 평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 및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시 주촌면 원지리 산167-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원지일반산업단지 계획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구 분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김해시	도시재생과장	이영우	개발기관 소속공무원
위 원	김해시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	-
	김해시	폐기물관리과장	조준현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노기원	-
	인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 수	김철환	환경분야
	인제대학교 (환경공학부)	교 수	박홍재	환경분야
	김해YWCA	회 장	정혜연	인간생태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 : 원지일반산업단지 계획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이영우 외 6명

나. 목적 :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다. 방법 : 서면심의

라. 사업개요 :

1) 사업명 : 원지일반산업단지

2) 위 치 :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167-1번지 일원

3) 면 적 : 223,425㎡

4) 사업시행자 : ㈜동신오택 외3개사 대표 임춘우

붙 임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1부(별송). 끝.

김해문화재단 1/3

< 심의의견 - 김해시 도시개발과>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서면심의 의견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1. 평가항목 및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 의견없음

3.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공사 중 진동 발생이 많은 부분인 하수관거 설치 미세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대책 (환경주관청의 고시된 저소음기계 사용 없는 경우), 우수유출량 변동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

4. 주민 의견 및 의견수렴 계획
   ○ 본 협의된 대상지역 주민 등의 공람 및 설명회 참여 하여 성이될 수 있도록 홍보·유도
   ○ 설명기간 연장 시 공람일을 재고하고,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홍보 통보
   ○ 사업부지 관련해 인접해 주민들이 불편이 미발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5. 관리방안 대상 여부
   ○ 의견 없음

6. 기타
   ○ 의견 없음

2015년 06월 21일

심의 위원장 : 이 경 우 (인)

< 심의의견 - 김해시 친환경생태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김해 원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 괄 의 견

○ 심의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 및 저감방안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심 의 의 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 -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산업단지 경계부분은 실제 완충녹지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지점 선정시 인근 정온시설 분포현황 및 도시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최대한 선정하고 사업시행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하여야 함

○ 평가항목 중 대기질 및 악취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대상지 2km로 변경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의 경우 산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향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없음

6. 기 타

○ 수질오염총량 관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별도 협의하여야 함.

2015. 7.

심의위원 신 형 식 (인)

< 심의의견 - 김해시 환경관리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원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 괄 의 견

○ 일반산업단지 경계부분 전체 완충녹지로 계획하고, 남측 주거지역 인접경계 부분은 완충녹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 의 의 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인근 주거지역 등 정온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충분한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하여 저감방안 마련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최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없음.
6. 기타
   ○ 주민의견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015. 8. .

심의위원 조 준 형 (인)

< 심의의견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김해 원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 위 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167-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10,780㎡
- 사업자 / 승인기관 : (주)경성에스테크 외 4개사 / 김해시
- 주요유치업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지구 인근에 덕암일반산업단지(운영중), 미노비즈일반산업단지(공사중)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기질·악취 평가대상지역은 사업지구 경계 2.0km 이내로 확대하여야 함
- 소음·진동은 사업부지 인근 주거지역, 교육시설 및 보사운반로, 공사차량 진·출입로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에 운영중 또는 공사중이거나 운영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시 설정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를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기상, 수질, 동·식물상
  - 3개월 이상의 부지기상 측정자료 또는 사업지역 주변 기상청 AWS 자료, 인근 산업단지 기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관성 분석 후 대기질 모델링에 사용하여야 함
  - 기상, 수질, 동·식물상은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시 문헌(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등에 의해 사업지역 및 인접지역에서의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실시
-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소음 · 진동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지역내 정온시설 분포현황(주거 밀집지역 등) 및 기존 평가도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평가하여야 함
- 대기질 현황조사는 2계절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역에서 발생가능한 악취물질을 선정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이므로, 현재 가동중인 업체의 배출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여 대기(악취 포함)오염물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최적의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업단지 조성시 사업지역에 인접한 국제마을, 축사에 미치는 영향일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공해지계획 및 완충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 질

- 공사시 및 운영시 폐수,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하천 수질(저수지 포함)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내 수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평가하여야 함
- 사업지구 동측의 국제대저수지, 남동측 국제저수지에 대한 집수구역, 수질 현황 등을 제시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입지제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하는 폐수를 인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위생 · 공중보건(건강영향)

- 운영시 발생 가능한 건강영향성가 대상물질을 확인하고 계절별 특성이 반영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누적평가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토 양

-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하여야 함

○ 지형·지질

- 표고차 약 83m 임야를 단차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지형훼손과 사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면 및 사토 최소화 방안, 지형변화지수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함

- 대량의 사토가 발생할 경우 사토처리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토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녹지자연도 7등급 및 경사도 20도 이상인 북동측 부지 일부를 사업지구에서 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경 관

- 사업지구 남측 주거지역에서의 조망이 용이하여 경관상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 여부

○ 주변지역에 주거지 및 개별공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본 사업시행으로 대기질, 동·식물, 지형·지질, 경관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5. 기 타

○ 동 심의결과를 반영 · 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 · 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71호, 2013.12.27.)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015. 7.

김해 장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서

심의위원 노 기 현(인)

< 심의의견 -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김해 원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 괄 의 견

○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환경녹지를 확보하고, 공사로 인한 먼지 및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함. 또한, 토사유출, 농경지 침수 등의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심 의 의 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총괄의견 참조.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은 적절하게 선정되었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추진시 주민의견을 적극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사업계획인 산업단지임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공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없음.

□ 행 정 사 항 (승인기관, 관계자)

○ 없음.

2015. 8. 4.

심의위원 김 동 환

< 심의의견 -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김해 환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 괄 의 견

○ 환중마지방 마을일원 등에 주변지역과 격리하고, 마을일 방부의 조경으로 대기오염물질 확산방지 및 공원화를 통한 휴식 및 산책공간 조성요함,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 방안제시

□ 생 의 의 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생존시설 및 주위 식수지를 포함한 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총괄의견에 제시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전 환경영향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은 적절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수렴시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5. 핵심평가 선정가능 여부

○ 무관함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명시)

○ 없음

□ 생 성 사 항 (승인기관, 관계자)

○ 없음

2015. 7.

심의위원 박 홍 제

< 심의의견 - 김해 YWCA>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김해 원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 괄 의 견

주변산업단지(덕암일반산업단지1,2, 이노비즈벨리일반산업단지 농소일반산업단지)들 과의 산업기능 집적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하나 과연 수요공급 측면에서 더 이상의 산업용지 공급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입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막도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불가피 하다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로 본 시설 입지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임.

□ 심 의 의 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최소1km이내지역은 물론 주변지역 산업단지, 주거단지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확대하여 보다 더 폭넓게 설정함이 타당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사업지구는 일상이 양호한 임야지역으로 자연생태계의 단절을 최소화 하기위한 완충녹지의확충, 동식물생태계 보전을위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대기,수질,자연생태환경도 중요하지만 주거생활환경분야에 대한 영향평가가 절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녹지 연결된 자연부락 취락지역은 물론 현재 조성중에 있는 원북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주거단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있어야 할것임.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제시된 의견수렴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설명회 및 공청회의 경우 주민이 원할 경우 2~3회까지 확대한 필요가 있음.

5. 학식평가 실행가능 여부

법에 의한 학식검토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기존의 인근지역 대규모 산업단지(농소일반산업단지,덕암일반산업단지) 및 주거단지(원북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자연취락지역)가 존재해 있는 지역으로써 반드시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하겠음.

2015. 7.

심의위원: 김해YWCA회장 정 재 연